

# 「세자트라숲 누구나강사」 운영규정

## 제 1장 총 칙

**제 1조(정의)** 통영RCE세자트라숲(이하 “사무국” 이라 한다) 「세자트라숲 누구나 강사」 프로그램은 삶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싶은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,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은 누구나 학생이 되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.

## 제 2장 강 좌 , 시 간 , 장 소 등

**제 2조(강좌분류)** 강좌는 생활의 지혜, 세대공감, 전문기술 및 재능나눔, 문화예술, 지속가능발전, 기타 로 분류한다.

**제 3조(교육시간)** 사무국에서 지원 가능한 강좌는 학기당 4차시, 차시당 2시간까지 가능하다. 다만, 사무국과 협의 시에는 차시당 3시간까지 가능하다.

**제 4조(교육장소)** ① 교육장소는 사무국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사무국과 충분한 협의가 된 후 야외수업을 진행한다.

② 단, 강사의 사설근무지, 개인교습소 등에서의 강의는 금지한다.

**제 5조(강사등록)** 강사는 강사활동 신청 시 강좌명, 강좌내용, 교육시간, 교육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.

## 제 3장 학 습 자

**제 5조(신청자격)** ① 학습자는 강사가 직접 모집하는 인원으로 8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필요시 사무국에서 온라인 홍보는 함께 진행한다.

② 학습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, 타인명의 도용 및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강좌는 취소한다.

③ 학습자는 강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선택 할 수 있다.

**제 6조(수강료 및 재료비)**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재료비가 발생할 경우 에는 학습자가 부담하되 강사와 학습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책정한다.

**제 7조(강좌신청 제한)** 학습자 개인, 단체 및 기관은 영리적 목적, 특정 정치성향지지 및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강좌를 신청할 수 없다.

**제 9조(준수사항)** 학습자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출석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강좌가 중지될 경우에는 향후 1년 내에서 강좌를 신청할 수 없다.

- ② 학습자는 지각 및 결석이 5회 이상 계속될 경우 참여하는 강좌를 포함, 향후 3년간 강의를 신청할 수 없다. 지각은 강좌 시작 시간 20분 이후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.
- ③ 강좌는 학습자 전체 출석률이 2회 연속 70% 미만이거나 누적 출석률이 70% 미만이 될 경우 자동으로 폐강된다.
- ④ 단, 신청자가 질병,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## 제 4장 강 사

**제 10조(강사자격)** 강사는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하는 자로 한다.

- 자신만의 생활의 지혜, 경험을 나누고 싶은 15세 이상 통영시민
- 학습동아리에서 배운 기술,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아리회원
- 기관의 활동(교육)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NPO활동가, 회원
- 전문성을 지역에 나누고 싶은 전문가 및 은퇴자

**제 11조(강의개설신청)** ① 홈페이지에 강의계획, 경력, 자격, 봉사활동내역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 12조(강좌운영계획)**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무국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강좌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강사는 교육장소 및 운영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학습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강의의 장소, 시간, 내용 등 변경은 사무국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무국에서 강좌를 폐강 할 수 있다.

**제 13조(학습자 관리)** ① 강사는 강의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학습자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. 이를 어길 시(예 : 강좌 시작시간 지연, 단축강의, 출결 조작), “사무국”에서 강좌를 폐강 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학습자의 서명을 받아 출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종강 후 원본은 “사무국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강사는 학습자가 부담하는 재료비 또는 교육장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및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 14조(강사료)** 강사료는 1시간에 30,000원으로 하며 초과1시간에 한해 15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 단,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는 조정될 수 있다.

**제 15조(준수사항)** ① 강사는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강사 직무연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강사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강사는 강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강좌 평가를 통해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

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강사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강사는 강좌 진행 시 강의 진행 및 학습자 관리소홀, 행정업무소홀, 강사교육 불참 등 사무국에서 강사의 자격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으며, 향후 강사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## 제 5장 강 좌 개 설 및 강 사 선 발

**제 16조(강좌개설 및 배정)** ① 강좌는 본 사무국에서 매 학기 공모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한다. 다만, 기 개설강좌의 강의만족도가 우수한 경우 평가를 면제하고 연장개설 할 수 있다.

② 강좌는 지역특성, 참여대상, 프로그램 특성, 교육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**제 17조(강사선발 및 배정)** ① 강사는 본 사무국에서 공모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한다. 단, 강사지원자가 부적격자 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개인정보, 강의계획, 경력, 자격, 이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③ 강사는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통해 1/3이상 부적합의견이 나왔을 때 향후 강사선정 시 배제할 수 있다.

**제 18조(현장점검)** 투명하고 공정한 강좌 운영을 위해 수시로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

**제 19조(강좌폐강)** ① 학습자의 출석률이 3회 연속 70% 미만이거나 누적 출석률이 70% 미만 일 경우, 강좌를 폐강한다.

② 단, 학습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하되 관련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